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난민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난민 관련 정부 부처들에 난민의 처우와 관련한 131가지 정보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그 중 비공개 된 정보는 54건으로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였습니다. 2개의 정보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이에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 처우 현황(2017. 12. 31기준)을 정리했습니다.

**PART.3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2018.04.18(공개), 법무부 난민과, 2018.02.05(공개))

**간단히 보는 2017년 국내 난민신청자 체류, 취업허가 현황**

|  |  |
| --- | --- |
| **3개월** |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평균 체류허가 기간은 3개월 입니다. |
| **8%** | 2017년 체류 연장 불허율은 전체 30,813건 중 8%(2,239건)입니다. |
| **5,944건** | 2017년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 건수는 5,944건입니다.  |

1. **난민신청자 체류 현황**

**[표1] 2017년 난민신청자(G-1-5비자 소지자) 체류 허가 현황 (‘17.1.1~12.31 기준)**

|  |  |
| --- | --- |
| **항 목** | **내 용** |
|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난민신청자 수 | 11,376명 |
| 난민신청자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접수 건수 | 30,813건 |
| 난민신청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건수 | 28,574건 |
| 난민신청자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건수 | 2,239건 |

2017년 체류연장 허가율은 전체 30,813건 중 92%로, 나머지 2,239건은 불허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지 입증서류[[1]](#footnote-1)를 요구하며, 체류기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했던 신청자들은 주로 ① 체류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절차 이행의 제약으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미등록체류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현 제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초기 6개월에 취업허가와 생계비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생계대책을 꾸려나갈 길이 없어, 안정적 기반이 없는 경우 거주지 마련을 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노숙까지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거형태를 선택하게 되며 체류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 등이 자신의 주거지 중 일부 공간을 내어주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주거 제공자가 거주숙소사실제공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출입국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길 원치 않을 경우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주소를 입증할 길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난민신청 초기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3만원이 부족하여,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3개월 주어지는 짧은 체류 기간**

그마저도 난민신청자는 작년 한 해간 평균 3개월의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2]](#footnote-2)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한 한 난민신청자는 “3개월마다 주사를 맞는 기분이다. 살기 위해서, 여기 살기 위해서 3개월짜리 주사를 계속 맞는 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 따라 난민신청자격인 G-1-5 체류비자 소지자에게 6개월 범위 내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민신청자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담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종종 1개월, 3개월 등의 짧은 체류기간을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짧은 체류 기간은 삶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체류연장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학교나 일터를 비워야 하고, 이는 난민신청자가 일상적으로 맺는 주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올해의 사건’ 중에도 체류 기간이 짧아 핸드폰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2017년 올해의 사건: http://nancen.org/1625)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았지만,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로 제한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평균 3~4년 소요되는 난민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체류허가기간을 최소 6개월 또는 그 이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담당 공무원이 6개월이 아닌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취업허가 현황**

난민신청자는 난민 신청 후 ‘G-1-5’ 체류자격을 받고,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난민법 제 40조[[3]](#footnote-3)에 따라 취업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소지하게 되는 ‘G‘ 비자의 경우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므로 통상 노동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4]](#footnote-4)**

|  |
| --- |
| 가. 취업 허가 대상-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허용 범위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단,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허가 기간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라. 제출 서류-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3] 연도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현황 (2017.12.31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건) |
| 합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14,282 | 327 | 1,024 | 2,474 | 4,513 | 5,944 |

 [표3]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중 노동권이 있는 사람은 약 5,619명[[5]](#footnote-5)이며, 취업활동허가 수는 총 5,944건입니다. 현 제도는 난민신청자의 취업 범위를 ‘단순노무직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의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건장한 성인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은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주거지 확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체류지 입증 서류가 없어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위 ‘불법’의 상황에 떠밀리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 건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6]](#footnote-6) 이 때문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 대비 허가 건에 대한 산출은 어려우나,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하는 난민신청자는 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과정에서 ① 취업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업허가 심사를 위해 사실상 채용 전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문제 ② 지나치게 짧은 체류 기간과 예측되지 않는 취업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고용 기간의 문제 ③ 관할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내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 ④ 복잡하고 잦은 취업허가 요구로 인한 고용주의 취업허가 비협조 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대기기간의 불투명성 ⑥ 일용직노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책 부족 ⑦ ‘단순노무직종’과 ‘전문직종’ 사이에 배회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심사기준의 공백 ⑧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자격, 능력, 희망을 반영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 배제 ⑨ 법무부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이해의 어려움 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통역 부재 문제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복잡한 취업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짧은 체류 기간과 복잡한 취업허가 절차로 사실상 취업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인 G기타 비자를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더 이상 ‘단순노무직종’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난민신청자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짐’으로만 여기며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근본 원인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운영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성: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
| --- |
| **난민인권센터 난민 처우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법무부 난민과,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난민현황, 2018.02.05 (공개)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련 통계, 2018.01.12 (공개) 법무부, 2017년 난민구료비 집행 내역 등, 2018.02.05 (공개)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고용, 산재보험 난민 관련 2018.03.07 (부존재)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난민인정자 등록 지원 현황, 2018.03.14 (부존재) 교육부, 난민 초중등 교육 현황 통계, 2018.03.14 (부존재)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2017년 결산 관련, 2018.03.16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난민 관련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현황, 2018.03.19 (부존재)보건복지부, 난민인정자 지원관련, 2018.03.21 (부존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난민인정자 지원 현황 관련, 2018.03.22 (부존재) 법무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소수자 난민 관련 통계, 2018.03.27 (공개) 법무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체류연장 관련, 2018.04.04 (공개)법무부, 재정착 난민 관련 2017년 예산 상세 집행 내역, 2018.04.04 (공개) 보건복지부, 난민인정자 장애인 정책 관련, 2018.04.06 (공개)교육부, 난민의 학력, 자격인정 관련, 2018.04.13 (공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G-1-5 비자 체류 연장 허가 관련, 2018.04.18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겅강보험 피부양 등록 관련, 2018.05.09 (공개)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관련, 2018.06.03 (처리 중)대한적십자사,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난민 지원 현황, 2018.06.04 (회신)법무부 외국인보호소, 각 외국인보호소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보호외국인 중 난민 현황, 2018.06.07 (공개)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2017년 운영 및 입소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2018.06.10(처리 중) |

1.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등으로부터 받은 주거확인서 등 [↑](#footnote-ref-1)
2.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2017년 한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평균 체류연장 기간’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234.3일이라는 결론과 함께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허가된 체류일자 2,665,325일을 17년 한 해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난민신청자 수인 11,376명으로 나누어 계산한 산출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체류연장허가 건당 대비 산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류 허가 건수인 28,574건을 대입하여 다시 산출해볼 경우 난민신청자는 지난 한 해 동안 1번의 체류연장허가 시 약 3개월의 (93일) 체류기간을 허가 받은 셈입니다. [↑](#footnote-ref-2)
3. 난민법 제 40조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footnote-ref-3)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 자격별 안내매뉴얼, 2018.05기준 [↑](#footnote-ref-4)
5. 17년 12월 31일 기준 심사대기자 9,557명 중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난민 신청 한 자 (취업허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난민신청자) 3,938명 제외한 수. 단, 6개월 이내 특수한 고려로 취업허가를 받았거나, 재신청을 하여 취업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footnote-ref-5)
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접수 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정보를 비공개 하게 될 경우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책임을 져야 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 난민제도의 현황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정보공개에 대한 올바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footnote-ref-6)